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1650

제안연월일 : 2025. 7.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411호)	윤준병의원	2025-03-27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0.) 상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455호)	문대림의원	2025-0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610호)	송옥주의원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626호)	어기구의원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771호)	문금주의원	2025-04-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166호)	이원택의원	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486호)	박수현의원	2025-05-12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107호)	박상웅의원	2025-06-26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0.) 상정 ※ 소위 직접 회부(2025.7.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145호)	서삼석의원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289호)	임미애의원	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324호)	서영교의원	2025-07-07	

가.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0.)에서 위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14.)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 마련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및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재해 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을 “지진, 해일, 태풍, 강풍”으로,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을 “병해충(病害蟲)”으로, “제5조제1항”을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

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을 “경영안정 등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비료대금”을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처분”을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수용·제거 처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처분으로”를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 1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지진, 해일, 태풍, 강풍----------병해충(病害蟲)----------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 3. ~ 13. (현행과 같음)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

	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신 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후단 신설>	제3조(재해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영안정 등의 지원----------
<신 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 략)	10.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3.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1. ----------
가. 수산종자대금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⑩ ----------제9항까지----------

정한다. ⑧ (생 략) 제7조(응급조치)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 ⑪ (현행 제8항과 같음) 제7조(응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수용·제거 처분----------.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